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2.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2.
- 다. 상 정 일 자 : 97. 2 (제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 안 자 : 내무과장 이 수 철

나. 제안사유

- 주민의 편익증진과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

다. 주요내용

-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13 : 00 → 17 : 00까지
½ 격주제 및 전원격주제
- 연가일수를 근무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하고, 병가.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고, 보상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 다음해 연가 1일가산.
- 연가는 오전.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하고, 진단서 없는 6일초과 병가일수는 해당 연가일수에서 제외
- 공가 허가 사항 추가 - 올림픽 체전등 주요행사 참가시
- 특별휴가 허가사항 추가 - 풍수해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5일이내 허용)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병항)

- 본 조례 개정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5244호 (96. 12. 31)에 의한 개정으로써, 내용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부 :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7
----------	--------

제출년월일 : 1997. 2. 4.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대통령령 제15,244호 '96. 12. 31)

2. 주요골자

-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함 (안 제13조 1항 단서, 제16조의 2 신설)
-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것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가.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함.
(안 제18조 1항. 3항 신설, 19조 3항 신설)
- 의사의 진단서 없는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할 경우 연가 일수에서 공제
(안 제20조 3항 신설)
-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
(안 제22조 제8호 신설)
-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에 재해 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안 제23조 9항 신설)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요일의 총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 (토요일 전일근무제)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 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 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 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의 제목중 "산입"을 "공제"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 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5조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제26조의 2를 제25조의 2로 하고,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13조 (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p> <p><u>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u></p>	<p>제13조 (근무시간) ①</p> <p>.</p> <p>.</p> <p>.</p> <p>.</p> <p><u>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u></p>
<p><u>(신설)</u></p>	<p>제16조의 2 (토요일전일근무제) ① 주민 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8조 (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u>근속기간</u>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 (연가일수) ① . . . <u>재직기간</u>	
<u>근속기간</u>	연가일수	<u>재직기간</u>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②재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 ^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 . <u>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u>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신설)		③ 당해연도에 <u>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 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u>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② (생략) (신설)</p> <p>③, ④ (생략)</p> <p>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u>산입</u>)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u>지각 또는 조퇴 3회는</u> <u>결근 1일로 한다.</u></p> <p>(신설)</p>	<p>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u>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u></p> <p>1. <u>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u> 2. <u>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 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u></p> <p>제1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 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u></p> <p>④,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u>공제</u>) ① (현행과 같음) ② <u>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u> <u>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u></p> <p>③ <u>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p>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제21조 (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할 수 있다.</p> <p>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p>	<p>제21조 (병가) ①</p> <p>.</p> <p>.</p> <p>.</p> <p>. <u>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u></p>
<p>1. 2 (생략)</p> <p>②. ③ (생략)</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 (공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7 (생략)</p>	<p>제22조 (공가)</p> <p>.</p> <p>.</p> <p>1~7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p><u>(신설)</u></p> <p>제23조(특별휴가) ①~⑤ (생략)</p> <p>⑥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u>근속한</u>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u>장기근속휴가</u>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근속기간</u>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⑦. ⑧ (생략)</p> <p><u>(신설)</u></p> <p>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u>1월</u>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8.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때</p> <p>제23조(특별휴가) ①~⑤ (현행과 같음)</p> <p>⑥ <u>재직</u> <u>장기재직</u> <u>휴가</u> <u>재직기간</u></p> <p>⑦. ⑧ (현행과 같음)</p> <p>⑨ <u>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u> 공무원은 5일이내의 <u>재해구호 휴가</u>를 얻을 수 있다.</p> <p>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u>30일</u></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현행과 같음)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현행과 같음
<u>제26조의 2</u>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u>(신설)</u>	제25조의 2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u>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u>
제26조 (겸직허가)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26조 (겸직허가) 현행과 같음 <u>제5장 정치운동</u>